

## ■ 최신 판례 ■

### [제약 · 바이오 · 의료] 전원 조치 전후의 의료과실이 경합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신민 변호사 | 서준희 변호사

#### 1. 사실관계

의사 甲은 A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적정량을 넘는 과다한 양의 마취제를 투여하였는데, 수술을 시작한 지 7분여 만에 A의 호흡이 정지되었음. A는 乙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乙병원의 의료진은 전원 된 직후 별다른 의학적 근거 없이 수액을 과다하게 투여하였음. 이후 A는 호흡 곤란이 심해지다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의 상태로 있다가 사망하였음.

#### 2. 쟁점

- 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완화
- 나. 전원 조치 전후의 의료진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 전원 조치 전 의료진의 손해배상 범위

#### 3. 판시사항

- 가. 판결요지

- (1) 의료소송에서 피해자 측이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 의사 甲이 A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A의 호흡이 정지되어 乙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A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甲의 마취제 과다 투여 등 과실과 A의 뇌손상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고, 乙병원 의료진의 과실도 A의 뇌손상 및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더라도 甲의 행위와 乙병원 의료진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나. 판결이유

- (1)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여야 한다.
- (2) 의사 甲이 A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A의 호흡이 정지되어 乙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A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甲에게 마취수술 과정에서 마취제를 과다하게 투여하고 호흡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이 있고, 마취수술 당시 A에게 뇌손상을 일으킬만한 다른 원인이 없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과실과 A의 뇌손상, 나아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고, 한편 乙병원 의료진의 수액 과다투여 등 과실도 A의 뇌손상 및 사망의 원인이 되었고, A가 사망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乙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기여한 바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A의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오로지 乙병원 의료진의 과실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甲의 행위와 乙병원 의료진의 행위는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A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甲에게 A의 사망 손해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4. 해설

가. 대법원은 종래부터 의료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위와 같이 완화하여 판단하였고, 이 판결 역시 그러한 입장을 재확인하였음.

나. 전원 조치 전후에 치료에 관여한 의사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원 조치 후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전원 조치 전의 의료과실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본 사안의 경우 손해(뇌손상)가 전원 조치 후 의료진의 과실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 조치 전후의 의료진들이 공동불법행위자 관계에 있다고 보아 전원 조치 전의 의료진에게 환자의 손해 전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2. 2. 17. 선고 2009다82275, 82282 판결](#)